

부속서 III

온두라스의 유보목록

주해

1. 부속서 III의 온두라스 유보목록은 다음을 규정한다.
 - 가. 나호 1목부터 5목까지와 다호에 기술된 의무에 대한 온두라스의 약속을 제한하거나 명확히 하는 두주
 - 나. 제1절에서는, 제11.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다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온두라스의 기존의 조치
 - 1) 제11.2조(내국민 대우)
 - 2) 제11.3조(최혜국 대우)
 - 3)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 4) 제11.5조(국경 간 무역), 또는
 - 5) 제11.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 그리고
 - 다. 제2절에서는, 제11.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온두라스가 제11.2조(내국민 대우), 제11.3조(최혜국 대우),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제11.5조(국경 간 무역) 또는 제11.8조(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에 의하여 부과되는 의무와 합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또는 더 제한적인 조치를 채택할 수 있는 특정 분야, 하위분야 또는 행위
2. 제1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 다. **관련의무**는 제11.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기재된 조치(들)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나호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 라. **정부수준**은 열거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 마. **조치**는 유보된 법, 규정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적시한다. 조치 요소에서 인용된 조치는
 - 1) 이 협정의 발효일에 개정 · 지속 또는 개신된 대로의 조치를 말한다. 그리고
 - 2) 그 조치의 권한에 따라, 그리고 이에 합치되게,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하위조치를 포함한다.

바. **유보내용**은 조치에 대한 일반적이며 비구속적인 설명을 제공한다.

3. 제2절의 각 유보항목은 다음의 요소를 규정한다.

가. **분야**는 유보된 일반 분야를 지칭한다.

나. **하위분야**는 유보된 특정 분야를 지칭한다.

다. **관련의무**는 제11.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그 유보목록에 열거된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제1항다호에서 언급된 의무(들)를 명시한다.

라. **정부수준**은 열거된 조치(들)를 유지하는 정부수준을 나타낸다. 그리고

마. **유보내용**은 그 유보항목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 하위 분야 또는 행위의 범위를 규정한다.

4. 제1절 비합치 조치의 해석에 있어서, 비합치 조치 유보항목의 모든 요소가 고려된다. 비합치 조치는 그 비합치 조치가 취해지는 금융서비스 장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해석된다.

가. 조치 요소가, 유보내용 요소의 자유화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 또는 금융서비스 장 부속서의 구체적 약속에 의하여 한정되는 한도에서, 그와 같이 한정된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리고

나. 조치 요소가 그렇게 한정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치 요소와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 밖의 요소 간의 불일치가 실질적이고 중대하여 조치 요소가 우선한다고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가 아니면, 조치 요소가 그 밖의 모든 요소에 우선한다.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한도에서 그 밖의 요소가 우선한다.

5. 제2절의 유보항목에 대하여, 제11.9조(비합치 조치)에 따라, 유보항목의 관련의무 요소에 명시된 이 협정의 조항들은 그 유보항목의 유보내용 요소에 적시된 분야, 하위분야 및 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6. 온두라스가 자국의 영역에서 서비스 제공의 조건으로 서비스 공급자가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자국 영역의 거주자일 것을 요구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제11.2조(내국민 대우), 제11.3조(최혜국 대우),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 또는 제11.5조(국경 간 무역)에 대하여 부속서 III에서 취해진 조치에 대한 목록은 그 조치의 한도에서 제9.3조(내국민 대우), 제9.4조(최혜국 대우) 및 제9.9조(이행요건)에 대한 비합치 조치로 작용한다.

7. 부록 III-가에서는 당사국들이 제11.2조(내국민 대우) 또는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와 비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제11.10조(예외)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특정 조치를 지칭한다.

두주

1. 이 협정상의 이러한 하위분야의 약속은 이 두주 및 아래 제1절 및 제2절에 규정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수행된다.
2.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한 온두라스의 약속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금융서비스를 공급하고 온두라스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법적 형태에 대한 비차별적 제한의 적용 대상이 된다.¹
3. 제11.2조(내국민 대우) 및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따른 온두라스의 약속은, 외국인 투자자가 온두라스에서 금융기관을 설립하거나 이에 대한 지배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국에서 동일한 금융서비스의 하위분야에서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는 금융기관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조건으로 한다.
4. 온두라스는 제11.4조(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제11.9조제1항다호(비합치 조치)에 따른 자국의 약속을 다음의 방식으로 제한한다: 제11.9조제1항다호는 제11.4조제1항가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만 적용되며, 제11.4조제1항나호에 관한 비합치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²

¹ 온두라스 상법 제90조에 따라 “주식회사(Sociedad Anónima)”는 분류에 따라 존재하는 기관으로, 주식으로 분할되는 설립자본을 가지고 있으며, 그 파트너들은 자신의 책임을 그들이 서명한 지분으로 한정한다. “주식회사(Sociedad Anónima)”를 구성하는 요건은 온두라스 상법 제92조에 규정된다.

² 상기 제4항에 명시된 제11.9조제1항다호의 적용상의 제한과 관련하여, 제11.3조(최혜국 대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절

1.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서비스, 은행 및 대부조합, 금융회사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최혜국 대우(제11.3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금융제도법, 법령 제129-2004호, 제5조, 제6조, 제18조 및 제32조(Ley de Instituciones del Sistema Financiero, Decreto No. 129-2004 del 24 de septiembre de 2014, Artículos 5, 6, 18, y 32) 법령 제60-99호, 1999.6.3(Decreto No. 60-99 de fecha de 3 de Junio de 1999)
유보내용	<p>외국 금융기관은 앞에서 언급된 조치를 준수하는 주식회사(S.A.)(Sociedades Anónimas),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로 설립되어야 한다.</p> <p>외국은행 지점 또는 대리점 운영은 온두라스에서 운영하는 사무소에 할당된 자본금액에 따라 제한된다.</p> <p>외국은행 지점 또는 대리점은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무실 및 그들의 각 자본준비금에 실질적으로 할당된 자본금액만을 발행할 수 있다.</p> <p>은행 및 보험에 관한 국가위원회(Comision Nacional de Bancos y Seguros)는 본점을 둔 국가에 상호주의가 없는 경우 외국은행 지점 또는 대리점의 개점을 허가하지 아니한다.</p> <p>이러한 맥락에서, 상호주의의 부재는 다른 국가의 법이 외국은행으로 설립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였음을 말한다.</p> <p>외국은행 지점은 자체 이사회 또는 행정위원회가 있을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하나, 온두라스에 주소를 둔 대표가 최소 2인이어야 한다. 그러한 대표들은 그 사업에 대한 일반 지시 및 수행을 담당하고 온두라스에서 활동하며 지점 운영을 실행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법적 권한을 가진다.</p>

2.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환전국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환전국법, 법령 제16-92호, 1992.3.3, 제4조(Ley de Casas de Cambio, Decreto No. 16-92 del 3 de marzo de 1992, Artículo 4)
유보내용	<p>온두라스 내의 환전국은 주식 회사(S.A.)(Sociedad Anónima)로 설립되어야 한다.³</p> <p>환전국 주주는 온두라스 국적의 자연인이어야 한다.</p>

³ 온두라스 상법 제90조에 따라 “주식 회사(Sociedad Anónima)”는 분류에 따라 존재하는 기관으로, 주식으로 분할되는 설립자본을 가지고 있으며, 그 파트너들은 자신의 책임을 그들이 서명한 지분으로 한정한다. “주식 회사(Sociedad Anónima)”를 구성하는 요건은 온두라스 상법 제92조에 규정된다.

3.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증권거래소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증권시장법, 법령 제8-2001호, 2001.6.9, 제21조(Ley de Mercado de Valores, Decreto No. 8- 2001 del 9 de junio de 2001, Artículo 21)
유보내용	온두라스에서 운영하는 증권거래소는 주식회사(S.A.)(Sociedad Anónima)로 설립되어야 한다.

4.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증권사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증권시장법, 법령 제8-2001호, 2001.6.9, 제49조(Ley de Mercado de Valores, Decreto No. 8-2001 del 9 de junio de 2001, Artículo 49)
유보내용	온두라스 내의 증권사는 주식회사(S.A.)(Sociedad Anónima)로 설립되어야 한다.

5.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펀드사무관리회사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증권시장법, 법령 제8-2001호, 2001.6.9, 제82조(Ley de Mercado de Valores, Decreto No. 8-2001 del 9 de junio de 2001, Artículo 82)</p> <p>펀드사무관리회사 규정 제3조, 결의안 제171/11-02-2003호에 따라 승인(Artículo 3 del Reglamento de las Sociedades Administradoras de Fondos, aprobado mediante la Resolución No. 171/11-02-2003)</p>
유보내용	온두라스 내의 펀드사무관리회사는 하나 이상의 뮤추얼펀드 및/또는 그 사안에 대한 법에 따른 투자펀드의 운영이라는 베타적인 사회적 목적을 가진 주식회사(S.A.)(Sociedad Anónima)로 설립되어야 한다.

6.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주식의 예탁, 보상 및 청산을 위한 중앙예탁기관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증권시장법, 법령 제8-2001호, 2001.6.9, 제139조(Ley de Mercado de Valores, Decreto No. 8-2001 del 9 de junio de 2001, Artículo 139)
유보내용	온두라스에서 주식의 예탁, 보상 및 청산을 위한 중앙예탁기관은 주식회사(S.A.)(Sociedad Anónima)로 설립되어야 한다.

7.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보험 및 재보험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p>보험 및 재보험 기관에 관한 법률, 법령 제22-2001호, 제9조, 제21조, 제47조, 제58조, 제96조, 제97조(Ley de Instituciones de Seguros y Reaseguros, Decreto No. 22-2001 del 11 de agosto de 2011, Artículos 9, 21, 47, 58, 96, 97)</p> <p>결의안 제948/05-08-2003호에 의하여 승인된 지점 및 외국보험기관, 국가은행 및 보험위원회 설립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제7조, 2003.8.15 관보게재(Reglamento de Establecimientos de Sucursales de Instituciones de Seguros Extranjeras, de la Comisión Nacional de Bancos y Seguros, aprobado mediante la Resolución No. 948/05-08-2003, Arts. 4 y 7, publicado en el Diario Oficial "La Gaceta," con fecha 15 de Agosto de 2003)</p> <p>국가은행 및 보험위원회 결의안 제947/05-08-2003호에 의하여 승인된 손해사정인 및 보험중개인에 관한 규정, 제3조, 2003.8.15 관보게재(Reglamento de Ajustadores de Pérdidas y Auxiliadores de Seguros, aprobado mediante la Resolución No. 947/05-08-2003 de la Comisión Nacional de Bancos y Seguros el 8 de Agosto de 2003, Art. 3, publicado en el Diario Oficial "La Gaceta," con fecha 15 de Agosto de 2003)</p> <p>2003.12.11 결의안 제443호, 제7조(k)호[Resolución No. 443 del 11 de Diciembre de 2003, Art. 7, subpárrafo (k)]</p>
유보내용	<p>온두라스 내에 조직되는 보험기관은 자본이 기명주식으로 분할되는 주식회사(S.A.)(Sociedad Anónima)로 설립되어야 한다. 설립자는 자연인 또는 법인일 수 있다.</p> <p>온두라스 내에 설립하고자 하는 외국보험기관은 제안된 회사의 최소 자본금 중 적어도 10퍼센트를 온두라스 중앙은행(Banco Central de Honduras)에 예치하거나 위의 금액을 국가 중권에 투자한다. 이 예치금은 신청이 승인 또는 처리된 경우 반환될 것이다.</p> <p>보험 대리인 또는 중개인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자연인은 온두라스 국민이거나 최소 3년 연속으로 온두라스의 거주자이어야 한다.</p> <p>손해사정인 또는 청산인, 사고조사관 또는 손해조사관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자연인은 온두라스 국민이거나 온두라스의 합법적인 거주자이어야 한다.</p> <p>외국보험기관 지점은 자체 이사회 또는 행정위원회가 있을 것이요</p>

	구되지는 아니하나, 온두拉斯에 주소를 둔 1인의 대표가 있어야 한다. 그 대표는 사업에 대한 일반 지시 및 수행을 담당하고 온두拉斯에서 활동하며 지점 운영을 실행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법적 권한을 가진다.
--	---

제2절

8.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저축대부조합
관련의무	내국민 대우(제11.2조) 최혜국 대우(제11.3조)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제11.8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유보내용	온두라스는 저축대부조합에 의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비합치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9.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은행 및 보험을 제외한 모든 하위분야
관련의무	금융기관에 대한 시장접근(제11.4조)
정부수준	중앙
조치	
유보내용	온두라스는 온두라스 내에서 은행 또는 보험사로 운영하고자 하는 기관을 제외하고, 온두라스 내 외국 금융기관 설립을 요구하는 모든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부록 III-가
온두라스

**제11.2조 또는 제11.4조와 비합치하지 아니하거나
제11.10조의 적용을 받는 특정 조치**

제11.10조(예외)에 따라, 온두라스는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건전성을 사유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함을 재확인한다.

제11.10조(예외)를 저해함이 없이, 온두라스가 자국의 법규에서 채택 또는 유지하고 한국 부록 III-1에 규정된 조치들과 동일하거나 그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모든 조치는 제11.2조 또는 제11.4조와 비합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조치 또는 관련 법규에 대한 개정, 변경 또는 수정은 원래의 조치의 취지와 충돌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11.2조 또는 제11.4조와 비합치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